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(법률 제31383호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)

가. 개정 이유

- 하반기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%에서 3.5%로 30% 인하한 조치의 적용기간을 6개월 간 연장하려는 것임

나. 개정 내용

-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간을 '21.6.30일에서 '21.12.31일까지로 6개월 간 연장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승용차 내수진작을 통한 하반기 경기회복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